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청주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단1755 판결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1755 가. 명예훼손

나. 모욕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나.다. B 3.가. 나.다. C 4.가.나.다. D

5.가. 나.다. E

송준구(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 C, D,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공소사실

검사

피고인 A는 환경부 H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I 후보의 비서관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회사의 직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 당시 I 후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I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사이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2. 4. 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K)을 이용하여 B에게 'L는 최근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음해의 투고까지 해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까지 겪었답니다. 인간도 아닌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2. 4. 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북도청 서관 1층 기자실에서 동아일보 M등 기자 수 명에게 전항과 같이 A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면서 'L가 I 후보의 성매수 관련 양심선 언을 하였는데, 이런 사람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4. 1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제1항과 같이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내용이 게시된 페이스북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및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1. 16. 및 2013. 5. 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파사 이혜성